

※ 3쇄1쇄 사용자는 [3판] 사용자를 위한 추록 201803-1(1월 추록)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 내용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1) 5월 추록1

p.87 본문수정

기 존	일시중지 가능 보험급여	의무 미이행자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 곤란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되, 전원요양 지시 거부 경우에는 휴업급여or상병보상연금 지급 중지
수 정	일시중지 가능 보험급여	의무 미이행자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 곤란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되, 전원요양 지시 거부 경우에는 휴업급여or상병보상연금or진폐보상연금

p.94 본문수정

기 존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출퇴근 중의 재해를 제외하고는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와 동일
수 정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인정범위와 동일(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행위 중의 사고를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해 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행위 중의 사고로 적용)

p.117 본문수정

기 존	수급권 소멸사유 노㉔16	자녀or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or파양된 때
수 정	수급권 소멸사유 노㉔16	자녀or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파양된 때

p.213 067번 정답수정

기 존	067-2(○) 067-4(○)
수 정	067-2(×) 067-4(×)

p.240 17번 문제에서 제시된 구직급여일액(참고: 1월 추록에 누락된 내용 - 3판2쇄에는 반영되어 있음)

기 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취직할 때(2012년 1월)의 연령: 50세 ○ 구직급여일액: 4만 원 ○ 미지급 소정급여일수: 120일
수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취직할 때(2012년 1월)의 연령: 50세 ○ 구직급여일액: 6만 원 ○ 미지급 소정급여일수: 120일

p.247 28번 해설수정

기 존	28 ①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한다(고보령 §95).
수 정	28 ① 육아휴직 시작~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150만원, 최저지급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100만원, 최저지급액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p.250 33번 정답수정(참고: 1월 추록에 누락된 내용 - 3판2쇄에는 반영되어 있음)

기 존	정답 > ②
수 정	정답 > ③

p.264 37번 정답·해설수정

기 존	037 (×) 출퇴근 중의 재해를 제외하고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와 동일하다.
수 정	037 (○) 해설삭제

p.266 047번 해설수정

기 존	04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는 일반근로자와 동일. 해당 지문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에 대한 내용
수 정	04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는 일반근로자와 동일

p.336 144번 ③ 정답·해설수정

기 존	144-③(○)
수 정	144-③ (×)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경우는 연금수급권 소멸사유에서 삭제되고, 연금지급정지 사유로 추가되었다.

p.343 07번 정답·해설 수정

기 존	정답 > ④ 07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25세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된다(연금법 §75①).
수 정	정답 > ③,④,⑤ 07 ③ 개정법에서 삭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참고로, 유족연금 지급 정지 사유이다(만약 파양되면 신청에 의해 지급정지 해제)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25세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된다(연금법 §75①). ⑤ 개정법에서 삭제.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참고로, 유족연금 지급정지사유이다(만약 악화되어 다시 2급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 지급 정지 해제).

p.346 13번 정답·법령수정

기 존	13 ④ ...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 5.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수 정	13 답 없음 (노만 수급권 소멸사유임) ...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파양된 때 ... 5. 삭제

(2) 5월 추록2

p.10* 본문수정

기 존	건설업 중 일괄적용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 인 사업(총공사금액은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공단승인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 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수 정	건설업 중 일괄적용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인 사업(총공사금액은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공단승인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 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이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p.170** 053번 해설수정

기 존	053 (x) 2017.12 개정으로 60억원 이상, 30명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수 정	053 (x) 개정 전 40억, 20명이었으나 개정 후 20억, 10명이다.

p.10*, p.170**의 수정사항은 아래 참고

참 고	법령의 시행일과 개별 조문의 시행일이 다를 경우 이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라는 형식으로 규정합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징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161호)을 보면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처럼 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28505호) 제1조는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제15조 제1항(개별실적용을 관련 조문)은 2019년도에 각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시행과 적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관은 제15조 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은 되고 있으나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제가능성이 낮고, 내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푸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	---

☐☐ 부 칙 <대통령령 제28161호, 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대통령령 제28484호, 2017.12.1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대통령령 제28505호, 2017.12.26.> [부칙 \(접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에 각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